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9
----------	-------

제안년월일 : 2026. 7. 6.

제안자 :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26. 8. 14.)이 예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복지도시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상임위원회에 '도시환경건설위원회'를 신설(안 제2조제4호)
-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제2호)
 - 현행: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 변경: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제3호)
 - 현행: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변경: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제4호)
 - 신설: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경제위원회 - 7명

3. 보건복지위원회 - 6명

4. 도시환경건설위원회 - 5명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새마포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관광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재정관리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도시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지동행국”을 “미래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체육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환경건설위원회

가. 도시환경국

나. 교통건설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건설위원회 - 9명 3. 복지도시위원회 - 9명 〈신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경제위원회 - 7명 3. 보건복지위원회 - 6명 4. 도시환경건설위원회 - 5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건설위원회 가.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략)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경제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 나. (현행과 같음) 다. 행정관리국 ----- --- 라. 기획재정국 ----- --- 마. 문화경제국 ----- --- 〈삭제〉

<u>는 사항</u> 사.·아. (생 략) 3. <u>복지도시위원회</u> 가. <u>복지동행국</u>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 <u>교육체육국</u>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 <u>환경녹지국</u>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u>도시관리국</u>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마. (생 략) 바. (생 략) 〈신 설〉 ③ (생 략)	바.·사. (현행 사목 및 아목 과 같음) 3. <u>보건복지위원회</u> 가. <u>미래교육국</u> ----- --- 나. <u>복지국</u> ----- --- 〈삭 제〉 〈삭 제〉 다. (현행 마목과 같음) 라. (현행 바목과 같음) 4. <u>도시환경건설위원회</u> 가. <u>도시환경국</u> 나. <u>교통건설국</u>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김자영
연 락 처	02-3153-608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